

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- 1443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3. 11. 15.

기 술 표 준 원 장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개정

고시명 “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”을 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”으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본문내용 중 제3조 내지 5조의 별표1, 별표2, 별표3의 안전기준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

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하며 전자과장해 및 전자과내성기준을 포함한다) 및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안전기준”이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적용하도록 이 고시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.
2. “개별안전기준”이란 이 고시로 정하여 기준번호와 기준명을 부여한 안전기준을 말한다.
3. “강제적용 안전기준”이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시 당해 제품에 관련되는 경우의 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, 기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말한다.
4. “참고적용 안전기준”이란 기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시 적용하거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시 참고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말한다.

5. “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”이란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에 관한 기준으로 안전인증시 당해 제품에 관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.
6. “전기용품기술기준”이란 전기용품형식승인시 적용하기 위한 “전기용품의 기술기준(1999. 6. 9 기술 표준원고시 제99-99호)”을 말한다.

제3조(강제적용 안전기준) 강제적용 안전기준은 [별표 1]에 따른다.

제4조(참고적용 안전기준) 참고적용 안전기준은 [별표 2]에 따른다.

제5조(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)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은 [별표 3]에 따른다.

- 제6조(개별안전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심의) ① 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개별안전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서 정한 전기용품 전문위원회에 그 내용을 회부할 수 있다.
- ②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제1항에 의한 전기용품전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개별안전기준의 관리) 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개별안전기준내용을 기준번호별로 문서철을 활용하여 관리하거나 정보기기용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안전기준의 적용) ① 안전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 정한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에 적용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전기준을 적용한다.
- ② 시행규칙 제3조 [별표2]의 제3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전기용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표준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에는 신청일에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.
- ④ 안전인증표시가 되어있는 전기용품은 당해 전기용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에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 부칙(2002. 3. 29)에 규정된 개별안전기준과 전기용품기술기준의 선택적용시기에 제조된 전기용품은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시 적용하였던 안전기준을 적용한다.

제9조(안전기준의 해석)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10조(신개발품의 안전기준 적용) ① 신개발품으로 당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개별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1. 국제기준(ISO, IEC 등)
 2.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(당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)
 3. 외국 국가기준 또는 단체규격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(당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국제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)
-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신개발품에 해당하는 개별안전기준이 제정된 경우 제조업자는 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전기용품을 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.